

예학교육연구원 규정(4-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학에 관한 모든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예학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 예학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학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예학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학 전반에 관한 연구
2. 예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3. 동자료의 번역 및 간행
4. 전통사상의 발굴 계승과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되는 사업
5.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6.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
7. 연구논문집 및 기타 자료집 간행
8.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원장 등)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조직) 연구원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에 기획관리부, 연구부, 자료조사부를 둔다.
2.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가. 기획관리부는 연구기획, 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 나. 연구부는 예학에 관련된 제반연구
 - 다. 자료조사부는 예학에 관련된 제반 자료조사
4. 연구원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원장 등의 직무) 연구원의 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부장은 해당분야의 연구 사업을 관장한다.
3. 간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4. 원장 유고시에는 기획관리부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원 등) 연구원의 연구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에 연구원, 객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공자를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해당분야의 전공자를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4.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중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원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원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운영계획의 수립
 - 나. 예산 및 결산
 - 다.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라.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마. 연구부서의 설치
 - 바.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학연·산 계통의 인사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재정) 연구원 경비는 수탁 연구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